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원천연구·융합연구의 정의 추가 등〉

■ 최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485호)

2025.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주요내용	2
IV . 총괄 체계 검토	3
V . 주요 항목별 검토	8
1. 원천연구·융합연구의 정의 추가 등(안 제1조·제2조)	8
2. 정부의 책무 및 연구자의 책무 등(안 제3조·제4조 및 제5조)	14
3. 기초연구진흥을 위한 지표조사 신설(안 제9조 신설)	18
4. 기초연구 인력양성 및 확충 등(안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 신설) ...	21
5. 기초연구 최고과학자의 지정·지원 신설(안 제20조 신설)	26
6. 주요 기술 및 연구개발 정책의 수립 등(안 제21조 및 제24조부터 제 27조까지 신설)	29
7. 기술개발지원 삭제(제16조 삭제)	33
8. 전담기관의 지정 및 권한의 위탁 삭제 등(안 제28조 신설 등)	36
9.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안 제29조)	4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수진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 14.

다. 회 부 일 : 2025. 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오래된 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기초연구 투자 확대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함.

국가 차원의 기초연구 진흥 견인과 글로벌 수준의 기초연구 역량 확보를 위해 기초연구 분야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총칙, 계획수립 및 기술 개발 등을 기준으로 별도의 장(章)을 구성하여 독립법으로서 지위를 강화하고, 법 구조를 체계화하려 함.

또한, 정부·연구자의 책무, 다양한 시책 수립 등을 위한 근거를 명시화하여 기초연구 관련 다양한 가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가. 원천·융합 연구 정의에 대해 목적·특성을 중심으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
- 나. 정부의 기초·원천 연구의 기본원칙을 고려한 시책 마련, 연구자의 윤리적 연구수행 및 성과 확산 노력 등 정부와 연구자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효율적인 기초연구진흥 정책 수립 등을 위해 기초연구 분야 연구성과, 연구인력 등 관련 통계 작성 및 지표 조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 라. 기초·원천연구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토록 신설함(안 제28조).
- 마. 오랜 기간 기초연구 수행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기초연구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최고과학자 지정·지원 근거 신설함(안 제20조).

IV. 총괄 체계 검토

- 개정안은 현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초연구법”)이 오래된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 현행법과 개정안의 제명은 동일하며 각 장별로 조문 체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제1장은 총칙으로, 현행법 제3조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안 제5조로 이동하고, 제4조 정부의 지원을 정부의 책무로 수정하여 안 제3조로 하며, 안 제4조에 연구자의 책무를 신설하였음.
- 제2장은 “기초연구진흥”에서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등”으로 장명을 변경하고,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을 안 제6조(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안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9조(기초연구진흥을 위한 지표조사)를 신설하였음.
- 또한, 제7조(기초연구진흥정책 등)을 제3장 기초연구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의 안 제10조·안 제11조·안 제13조 및 안 제15조로 구체화하여 이동하였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도 제3장

의 안 제18조·안 제19조 및 안 제16조로 각각 이동하였음.

□ 개정안 제3장은 “기초연구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등”으로, 종전의 제2장에서 이동한 조문 외에 추가로 안 제12조(대형 연구인프라 활용 기반 조성), 안 제14조(기초 연구 성과 확산), 안 제20조(기초연구 최고과학자의 지정·지원)을 신설하였음.

□ 현행법 제4장 중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2026.2.1. 시행)」의 제정에 따라 삭제될 예정인 조문으로, 개정안 내용에서 제외되었음.

□ 종전의 제4장에서 제16조(기술개발지원)은 삭제되었고, 안 제21조 및 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가 신설되면서 기술개발지원에 대한 내용이 원천연구, 융합연구로 구체화되었음.

□ 종전 제4장 및 제5장은 “제5장 전담기관 지정 등”으로 통합되었고, 안 제28조(전담기관의 지정)이 신설되었고, 현행법 제19조(사후관리), 제20조(권한의 위탁), 제20조의2(감독명령 등),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및 제21조(벌칙)이 삭제되었음.

현행법		개정안		비 고
제명	기초연구진흥 및	제명	기초연구진흥 및	좌동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3조 정부의 책무	제4조→제3조
			제4조 연구자의 책무	신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제5조
	제4조 정부의 지원		(제3조로 이동 및 내용 추가)	제4조→제3조
제2장 기초 연구 진흥	제5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제2장 기초 연구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제6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제5조→ 제6조·제7조로 구체화
	제6조 기초연구사업의 추진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7조 기초연구진흥정책 등		제8조 기초연구사업의 추진	제6조→제8조
	제8조 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제7조→제10조· 제11조·제13조·제 15조로 구체화
	제9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삭제
	제10조 연구 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			제9조→제31조
	제11조 학술단체활동지원			제12조에 일부포함
	제12조 국제공동연구지원			제11조→제18조
	제13조 공공기관의 기초연구비 지원			제12조→제19조
				제13조→제16조
	제13조2 시범사업의 실시		제9조 기초연구진흥을 위한 지표조사	신설
				제13조의2→제17조
		제3장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기반	제10조 기초연구 인력양성 및 확충	제7조 구체화
			제11조 기초연구를 위한 시설·장비 확충	제7조 구체화

		조성 등	제12조 대형 연구인프라 활용 기반 조성	신설(제10조 내용 일부 포함)
			제13조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연구소의 육성	제7조 구체화
			제14조 기초연구 성과 확산	신설
			제15조 민간의 기초연구 투자 장려 시책	제7조 구체화
			제16조 공공기관에 대한 기초연구 투자 권장	제13조→제16조
			제17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13조의2→제17조
			제18조 학술단체 활동지원	제11조→제18조
			제19조 국제공동연구지원	제12조→제19조
			제20조 기초연구 최고과학자의 지정·지원	신설
제3장 기술 개발 지원		제4장 기술개발 지원	제21조 주요 기술 및 연구개발 정책의 수립	신설
	제14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22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4조→제22조
	제14조의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삭제(「기업부설 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신설에 따른 삭제)	
	제14조의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제14조의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제14조의5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14조의6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제15조 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제23조 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제15조→제23조
	제16조 기술개발지원			삭제
			제24조 원천연구 지원	신설
			제25조 도전적 연구개발사업 지원	신설
			제26조 융합연구의 지원	신설
			제27조 융합연구개발	신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장 기술료 및 참여제한		제5장 전담기관 지정 등	제28조 전담기관의 지정	신설
	제17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29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7조→제29조
	제18조 참여제한 등		제30조 참여제한 등	제18조→제30조
			제31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제9조→제31조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19조 사후관리			삭제
	제20조 권한의 위탁			삭제
	제20조의2 감독명령 등		제32조 감독명령 등	제20조의2→제32조
	제20조의3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삭제
	제21조 벌칙			삭제
	제22조 과태료		제33조 과태료	제22조→제33조

V. 주요 항목별 검토

1. 원천연구·융합연구의 정의 추가 등(안 제1조·제2조)

가. 주요 내용

□ 현행법은 제2조에서 “기초연구”에 대해서만 정의하고 있는데, 안 제2조는 기초연구 뿐만 아니라, 원천연구, 융합연구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있음.

□ 또한 현재에는 「기초연구법」 제6조제1항제3호¹⁾에서 “대학”을 약칭하고 있고,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정의나 약칭은 없는데, 개정안은 대학과 연구기관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기초연구</u> 를 지원·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u>도모하며</u>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과학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연구</u> ----- ----- <u>도모하며</u>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 <u>기초연구</u> ”란 <u>기초과학(자연현상에 대한 탐구 자체를</u>	제2조(정의) 이 법에서 <u>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

1) 「기초연구법」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현행	개정안
목적으로 하며, 공학·의학·농학 등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 원리와 이론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의학·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 <신설> <신설> <신설>	1. “기초연구”란 자연현상에 대한 탐구나 관찰할 수 있는 사실들의 발견 자체를 목적으로 새로운 지식이나 이론을 획득하기 위해 행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 2. “원천연구”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독창적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활동으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 3. “융합연구”란 단일 분야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문제 해법을 제시하는 범 학제형 협력연구활동을 말한다. 4.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의 학교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다.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라.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

현행	개정안
<u><신 설></u>	<u>과학기술원</u> <u>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u> <u>5.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u> <u>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기초연구 분야의 연구기관</u> <u>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u> <u>다. 연구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u> <u>라. 기초연구 분야의 대학 부설연구기관</u> <u>마. 국공립연구기관</u> <u>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u> <u>사.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u>

나. 검토 의견

□ 기초연구, 원천연구 및 융합연구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통해 현재 정책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²⁾를 법률에 반영하여 정책의 대상이나 범위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개정안과 같이 정의에 “대학” 및 “연구기관”을 추가하는 것도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대학”의 범위가 현행법과 상이한데, 개정안에서 추가되는 「고등교육법」상의 교육대학, 방송대학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법의 목적에 비추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에서는 “대학”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으로 보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³⁾의 학교” 및 4대 과학기술원을 의미하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에 따르면, 원천연구, 융합연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일반적인 정책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3)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고 있어 그 범위가 상이함.

○ 개정안에 따를 경우, 「고등교육법」에서 인용하는 학교의 범위에 교육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및 각종학교가 추가됨.

○ 그런데, 기초연구를 지원·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 축적을 도모하고,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양성하려는 「기초연구법」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교육대학이나 방송대학 등 원격대학은 그 성질상 직접적인 정책이나 지원의 대상이 되기 어려워 보임.

○ 따라서, 특별히 교육대학이나 원격대학에 대하여 시책을 마련하거나 지원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다면, “대학”은 현행법의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 4대 과학기술원을 추가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연구기관” 중 “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보조금이나 정부의 보조금의 받는 연구기관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현행법은 “연구기관”을 제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4)에서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4) 「기초연구법」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

나열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연구기관”을 별도로 정의⁵⁾하면서 연구기관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이 중에서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으로 그 범위가 크게 넓어짐.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연구기관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은 통상적으로 “출연연구기관”이라 지칭하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법상 출연연구기관이 아니더라도 안 제2조제5호사목을 통해 포함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국공립연구기관

5) 「기초연구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기초연구 분야의 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연구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라. 기초연구 분야의 대학 부설연구기관

마. 국공립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사.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2. 정부의 책무 및 연구자의 책무 등(안 제3조·제4조 및 제5조)

가. 주요 내용

- 현행법 제4조는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금융 지원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정부의 책무”로 강화하고, 연구자의 자율성 및 창의성 존중, 연구분야의 다양성 확대 등 구체적인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 또한, 정부의 책무와 병렬적으로 연구자의 책무를 두어, 연구자는 연구과정에서 성실하게 윤리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후속연구자를 존중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기초연구 성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였음.
- 현행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제5조로 이동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u>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필요한 재정·금융 지원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u>	제3조(----- 책무) ① 정부는 ----- ----- <u>기초연구 진흥, 원천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적극적인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u>
<신 설>	② 정부는 제1항의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고려하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초연구진</u>	<u>여야 한다.</u> <u>1. 연구자의 자율성 및 창의성 존중</u> <u>2. 기초·원천연구 분야의 다양성 확대</u> <u>3. 국가 경제성장과 산업 발전, 공공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u> <u>4. 독창적 기술로 다양한 분야에 응용·연계</u> <u>5. 기초·원천연구 분야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 지속</u> <u>6.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기초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 증진</u> <u>7. 젊은 연구자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u> <u>8. 장기간 기초·원천연구 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조성</u> <u>9. 국내외 협업 연구 장려 및 활성화</u> <u>제4조(연구자의 책무) ① 연구자는 기초·원천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기초·원천연구 전 과정을 성실하게 윤리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u> <u>② 연구자는 기초·원천연구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후속연구자를 존중하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③ 연구자는 기초·원천연구 수행을 통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사회의 발전에 기초연구의 성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와 같</u>

현행	개정안
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음)

나. 검토 의견

-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정부의 책무 및 연구자의 책무를 병렬로 규정한 것은, 정부는 기초·원천 연구진흥을 위한 기본원칙 및 정책을 마련하고, 연구자는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윤리적 연구를 수행하고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연구자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인 연구자에게 국가와 동일하게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지식공유·성과 확산 노력과 같은 적극적인 책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을 보임.
- 안 제4조제1항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윤리적으로 수행할 책무를 두는 것으로 소극적인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은 연구자가 본인의 연구를 통해 축적한 지식을 공유하고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책무를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그런데 개인에게 국가와 같이 “책무”를 부여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연구자의 책임”을 부여하는 유사 입법례⁶⁾에서도 연구자에게 적극적인 노력이나 성과 공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3. 기초연구진흥을 위한 지표조사 신설(안 제9조 신설)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제9조(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지표조사)를 신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 분야의 연구동향, 연구성과 등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지표를 조사·분석하도록 규정하였음.

개 정 안
제9조(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지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 진흥에 관한 각종 계획 및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 분야의 연구동향, 연구성과, 연구성과의 활용 및 연구인력의 활동 등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지표를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및 지표의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관련 지표의 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 의견

- 안 제9조는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지표조사를 신설하여 기초연구와 관련된 각종 계획 및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여 정책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현재 기초연구사업과 관련된 통계는 「국가연구혁신개발법」 7) 및 「과학기술기본법」 8)에 근거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기초연구사업의 과제 및 성과 분석은 한국연구재단이 수행하고 있음.

○ 한국연구재단은 매년 기초연구사업 통계연보 및 기초연구사업 투자성과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 해당 사업에 약 1천만원이 소요됨.⁹⁾

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포함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의무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의무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하 생략)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①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개발기간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단계평가(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최종평가(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8)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투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조사와 분석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한국연구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통계작성·분석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이고,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통계 및 조사·분석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에는 안 제9조에 따라 통계작성,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규정이 없는데, 해당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수행할 계획이 아니라면 위탁의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 안 제28조¹⁰⁾에서 전담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해당 규정의 전담기관을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안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제9조에 따른 지표조사 관련 업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임.

9)

구분	전문가	소요 예산	산출 내역
기초연구사업 통계연보	데이터 정리를 위한 단기인력 활용비	3,000,000원	3,000,000원 × 1개월 × 1명
	보고서 발간 인쇄비	1,638,000원	11,700원 × 140부
기초연구사업	보고서 검토 자문료(성과분석위원)	3,900,000원	100,000원 × 39명
투자성과분석보고서	보고서 발간 인쇄비	1,200,000원	15,000원 × 80부
총 계		9,738,000원	-

10) 「기초연구법(안)」 제28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위탁 업무
2. 제12조에 따른 대형 연구인프라 활용 기반 조성 관련 업무
3. 제17조에 따른 시범사업 관련 업무
4. 제20조에 따른 기초연구 최고과학자 지정 관련 업무
5. 제26조, 제27조에 따른 융합연구 관련 지원 업무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초연구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위탁하는 업무

4. 기초연구 인력양성 및 확충 등(안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 신설)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에 기초연구 인력양성 및 확충(제10조), 시설·장비 확충(제11조), 대형 연구인프라 활용 기반 조성(제12조),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연구소의 육성(제13조), 기초연구 성과 확산(제14조), 민간의 기초연구 투자 장려 시책(제15조)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개 정 안
제10조(기초연구 인력양성 및 확충) 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필요한 연구인력의 확보를 통한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환경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1. 대학교수, 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의 연수 및 연구비 지원 2.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의 연구장학금 지원 3. 대학부설연구소 및 우수연구집단 형성 지원 4. 연구교수(연구조교를 포함한다)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교수 및 연구원의 연구휴가제도의 활용
제11조(기초연구를 위한 시설·장비 확충) 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 기초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연구시설·공동연구시설, 기자재 및 장비 등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대형 연구인프라 활용 기반 조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 원천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되는 대형연구시설·장비 등 인프라(이하 “대형 연구인프라”라고 한다)가 연구성과를 창출 및 확산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형 연구인프라의 활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

개 정 안

하여 공동활용체계 구축, 공동활용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형 연구인프라의 구축·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형 연구인프라 확보 및 활용관련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인력 및 관련 연구기관의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연구소의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소가 분야별 기초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학부설연구소 및 우수연구집단 형성 지원
2.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등 산업계, 학계 및 연구소 간의 교류 추진
3. 기업 등 민간의 대학 및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 촉진
4. 그 밖에 기초연구환경 조성 및 기초연구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14조(기초연구 성과 확산) ① 정부는 기초연구 성과가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초연구 성과에 기반한 기술의 실용화 및 기술 창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기초연구 분야가 필요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 성과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간의 기초연구 투자 장려 시책) ① 정부는 민간에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민간이 기초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기부 또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개정안의 내용 중 제10조(기초연구 인력양성 및 확충), 제11조(기초연구를 위한 시설·장비 확충), 제13조(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연구소의 육성), 제15조(민간의 기초연구 투자 장려 시책)은 각각 현행법 제7조(기초연구진흥정책 등)¹¹⁾의 제1호·제2호·제3호·제5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를 구체화한 것임.
- 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의 신설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7조와 달리 각 분야별로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문으로 각각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시책을 마련할 것을 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대부분의 내용이 시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인 수익이나 침익을 주지 않는다는 점, 현행법 제7조와 같이 규정하는 것과 실질적인 차이가 크게 없다는 점 등을 고

11) 「기초연구법」 제7조(기초연구진흥정책 등) 정부는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학교수, 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의 연수 및 연구비 지원
2.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의 연구장학금 지원
3. 연구교수(연구조교를 포함한다)제도, 교수의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의 활용
4. 대학의 연구시설 및 기자재 지원
5. 대학부설연구소 및 우수연구집단 형성 지원
6.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연구 시설·장비 공동활용 등 산업계·학계 및 연구소 간의 교류 촉진
7. 기업 등의 대학 기초연구 지원 촉진
8. 그 밖에 기초연구환경 조성 및 기초연구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려하여 각 조문별로 시책 마련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5조는 민간의 기초연구 투자 장려 시책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5조제2항에서 우대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음.

○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란 법률이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사항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으로, 국민에게 수익적인 법률에는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¹²⁾

○ 안 제15조제2항은 기부 또는 투자를 한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한 우대조치를 두고 있는데, 우대조치가 어떠한 것인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

○ 해당 조문은 국민에게 수익적인 법률에 해당하므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우대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¹³⁾에서도 우대조치의 범위를 추측할 수 있도

12)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p.33

1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에 대한 포상 등 사업재편 지원 활동 장려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록 예시를 두고 위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안 제15조제2항도 어떠한 종류의 우대조치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위임할 필요가 있을 것임.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稅制)·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기초연구 최고과학자의 지정·지원 신설(안 제20조 신설)

가. 주요 내용

- 안 제20조는 장기간 기초연구를 통해 성과가 탁월한 과학자를 기초연구 최고과학자로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 정 안

- 제20조(기초연구 최고과학자의 지정·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장기간 기초연구를 통해 성과가 탁월한 과학자를 기초연구 최고과학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초연구 최고과학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기초연구 최고과학자의 지정요건과 지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 의견

- 안 제20조는 기초연구 최고과학자를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초연구 과학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려는 취지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현재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을 통해 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포상제도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기초과학 분야에 대해서 추가적

인 포상이나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할 것임.

- 현행 「기초연구법」에는 기초연구과학자에 대하여 지원이나 포상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전체 과학기술인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여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등¹⁴⁾의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여 예우하고 있음.
- 또한, 「과학기술기본법」 제31조¹⁵⁾에 따라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한국과학상, 젊은과학자상,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올해의 여성 과학기술인상 등 우수한 과학기술자에 대한 포상을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현재의 과학기술인에 대한 포상 등의 지원이 이미

14)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2. 과학기술 관련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 등의 편의 제공
4. 과학기술유공자의 공훈록 발간, 주요 저서·논문 등 업적 홍보
5.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
6. 출입국 심사 우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5) 「과학기술기본법」 제31조(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①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존중·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안정적인 과학기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기술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이룬 우수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하고 그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과학기술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존재하고, 기초과학 분야¹⁶⁾에서 특별히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및 수상 실적이 낮지 않다면 별도의 지원 규정 마련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유공자의 경우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91명 중 자연분야(수학, 물리, 화학, 지구화학)가 26명, 생명 분야 중 생명과학 분야가 6명으로,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5.2%임.
-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의 경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8명의 수상자 중 기초과학 분야의 수상자는 13명(27.1%)이고, 젊은과학자상의 경우 자연과학분야와 공학분야가 격년주기로 교차 수상하고 있음.

□ 한편, 기초연구 분야 최고과학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안 제20조제2항은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에서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기 보다는 안 제15조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16)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분야를 기초과학 분야로 봄.

6. 주요 기술 및 연구개발 정책의 수립 등(안 제21조 및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신설)

가. 주요 내용

- 현행법에서 기술개발지원에 해당하는 제3장은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이 기업부설연구소에 관련된 내용으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삭제될 예정임.
- 안 제21조부터 안 제27조까지는 제4장 기술개발 지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제21조(주요 기술 및 연구개발 정책의 수립), 제24조(원천연구 지원), 안 제25조(도전적 연구개발사업 지원), 안 제26조(융합연구의 지원), 안 제27조(융합연구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등)이 현행법에서 신설되는 내용임.
- 안 제21조는 현행법에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기술개발지원”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이고, 안 제24조부터 안 제27조까지는 개정안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추가되는 원천연구 및 융합연구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려는 것임.

개 정 안

제21조(주요 기술 및 연구개발 정책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관 기술개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전략적 투자 등을 위해 소관 주요 기

개 정 안

술, 연구개발 분야별 종합적인 계획·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주요 기술, 연구개발 분야별 종합적인 계획·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시책을 수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분야별 계획·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 연구개발의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2. 핵심 기술 확보 계획 및 전략
3. 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환경조성과 그 밖의 지원제도
4. 핵심 기술 확보,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계획과 재원 확보방안
5.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방안
6. 관련 연구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계획
7. 그 밖에 기술,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원천연구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천연구와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연구 및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천연구 육성과 관련하여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게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도전적 연구개발사업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지원하고,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전적 연구개발 지원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추진·관리 계획
2. 도전적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제도의 마련
3. 도전적 연구개발 관련 투자의 확대
4. 그 밖에 도전적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6조(융합연구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제, 기술간 융합기술을 육

개 정 안

성하여야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융합연구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융합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융합연구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융합연구개발의 발전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융합연구개발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추진계획
3. 융합연구개발 관련 제도의 마련
4. 융합연구개발 관련 투자의 확대
5. 융합연구개발 혁신 역량의 강화
6. 도전적 융합연구개발 촉진
7. 융합연구개발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
8. 융합연구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9. 융합연구개발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융합연구개발의 발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검토 의견

- ☐ 현행법 제3장 기술개발지원은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제4장 기술개발 지원은 주요 기술 및 연구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기술개발의 범주에 들

어가는 원천연구와 융합연구를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세부 조문을 신설하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 다만, 안 제21조제1항 단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시책을 이 법에 따라 종합적인 계획·시책을 수립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다른 법령이 어떤 목적으로 계획·시책을 수립하였는지 예측할 수 없고, 계획·시책의 특성상 수립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

○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면 절차상 효율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지만, 계획·시책의 경우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법령상 목적에 따라 정부 내부에서 그 방향을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특별한 효과가 발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임.

7. 기술개발지원 삭제(제16조 삭제)

가. 주요 내용

□ 현행법 제16조는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조문은 기업부설연구소에만 적용되는 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삭제되는 조문은 아니지만, 개정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 있음.

법률 제20727호(2026.2.1. 시행)

제16조(기술개발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동이용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및 해당 시설의 이용알선사업
2. 기술개발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
3. 국내외 기술개발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사업
4. 기술개발·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개량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설립 지원 및 그 운영에 관한 지도사업
6. 기술개발 성과보급·사업화 촉진 및 공동연구 알선사업
7.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제작·판매 또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용을 신청하고 과학기술정

법률 제20727호(2026.2.1. 시행)

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를 정하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과 허가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용도 외로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청문을 거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 의견

□ 현행법 제16조는 기술개발지원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제작·판매 또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 해당 규정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항에 따른 연구용 사용 신청이 드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음.

□ 이에 대해 향후 연구용으로 예외적 사용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 내용에 포함할 것인지와 사례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
요가 있을 것임.

8. 전담기관의 지정 및 권한의 위탁 삭제 등(안 제28조 신설 등)

가. 주요 내용

□ 안 제28조는 기초연구의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사업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제12조에 따른 대형 연구인프라 활용 기반 조성 관련 업무 등을 전담기관이 수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 정 안
제28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위탁 업무
2. 제12조에 따른 대형 연구인프라 활용 기반 조성 관련 업무
3. 제17조에 따른 시범사업 관련 업무
4. 제20조에 따른 기초연구 최고과학자 지정 관련 업무
5. 제26조, 제27조에 따른 융합연구 관련 지원 업무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초연구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위탁하는 업무
③ 정부는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개 정 안
3. 전담기관의 업무실적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담 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와 더불어 현행법상 권한의 위탁(제2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20조의3) 및 사후관리(제19조)는 삭제되었음.

현 행
제19조(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권한의 위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나. 검토 의견

- ☐ 안 제28조(전담기관의 지정)를 신설하고, 권한의 위탁(현행법 제20조)를 삭제한 것은 현재의 수탁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련 사업 및 업무를 위탁하려는 취지로 보임.
- ☐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첫째, 안 제28조는 제1항에서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 전담기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각 호로 나열하고 있어, 하나의 전담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이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담기관을 여러 개 지정할 예정이므로 이에 맞추어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제2항 각 호의 사업은 한 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우며,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연구재단 등 다음과 같음.

각 호의 업무	수탁가능 기관
1. 기초연구사업의 추진 위탁 업무	한국연구재단
2. 대형 연구인프라 활용 기반 조성 관련 업무	기초연구지원연구원(국가연구시설 장비진흥센터)
3. 시범사업 관련 업무	한국연구재단
4. 기초연구 최고과학자 지정 관련 업무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등
5. 융합연구 지원	한국연구재단

각 호의 업무	수탁가능 기관
6. 기타 기초연구 관련 정책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둘째, 전담기관의 경우에도 일반 위탁 규정에 따른 기관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현행법에서 삭제되는 “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를 전담기관에 적용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9.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안 제29조)

가. 주요 내용

□ 현행법 제17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안 제29조로 하면서, 제4항에서 진흥기금의 수입으로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추가하였음.

현행	개정안
제1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초연구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체연구(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제22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에 따라 기초연구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체연구(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의 ----- 기술료를 징수 및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22조----- ----- ----- -----.
③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납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부 3.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는 진흥기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제3항제1호에 따른 보상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2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는 -----.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 의견

☐ 안 제28조제4항에서 진흥기금의 수입으로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추가할 경우 진흥기금의 재원을 보다 원활히 확보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기대됨.

☐ 다만, 진흥기금의 재원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제2항17)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문의 개정 없이 개별법

17)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에서 기금의 재원을 추가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할 필요가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236

-
1. 정부의 출연금 및 용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6.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7.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